제 104호

행 정 명 령

주 재난 비상사태를 위한 교통 인프라 복구와 관련된 조항 일시 중단

2013년 6월 28일에 본인은 Broome, Chenango, Clinton, Delaware, Essex, Franklin, Herkimer, Madison, Montgomery, Oneida, Otsego, Tioga, Schoharie, St. Lawrence 및 Warren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103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본인 ANDREW M. CUOMO 뉴욕주 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,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-B조의 29-a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, 본 행정 명령이 발행된 날짜로부터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일시 정지합니다:

고속도로법 섹션 38(1), (2), 그리고 (3), 및 경제개발법 4-C 조항, 교통부 장관이 긴급 계약 체결을 인가할 필요가 있고 계약상의 설계 및 건설 서비스를 결합하고,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;

주 재정법 섹션 112, 주 헌법 섹션 1, V 조항에 일치하는 데까지, 그리고 교통부 장관이 주 계약인들에게 또는 긴급 계약 체결에 추가의 일, 현장 및 시간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;

주 재정법 섹션 136-a, 교통부 장관이 한 계약의 설계 및 건설 서비스의 결합이 필요하거나, 설계 및 건설 점검 서비스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;

주 재정법 제163조, 교통부 장관에게 기준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물품 및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범위까지;

환경 보존법 제8 조 및 뉴욕주 규칙 및 규정법 타이틀 17의 파트 15 및 타이틀 6의 파트 617, 교통부 장관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구조물의 교체, 복구 또는 재건을 위해 작업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범위까지; 그리고

2011년 법률의 챕터 56의 파트 F, 교통부 장관이 규정된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계-건설 및 최선 가액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.

이천일십삼년 칠월 일일 알바니시에서 자필로

작성하고 주의 인장으로 날인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

Korean